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택배 의무휴업일의 도입〉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1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2216291)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택배 의무휴업일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등)	3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221629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30인
2. 제 안 일 : 2026. 1. 23.
3.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여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물량 풀림 등이 우려되며 강제력이 없어 배송 경쟁이 재발하는 등 한계가 발생함.

또한 택배 산업의 특성상 특정 업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휴업할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휴무가 불가능함.

이에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의무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휴업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호 신설).
- 라. 의무휴업일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

Ⅲ. 검토의견

1. 택배 의무휴업일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설날, 추석, 선거일 등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휴무로 인한 불이익한 조치를 방지하도록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의무휴업일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날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u> <u>1. 설날</u> <u>2. 추석</u> <u>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u> <u>4. 그 밖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u>

현행	개정안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②(생략)	항에 따른 의무휴업일과 다른 날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배송 물량 및 배송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제3항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위탁수수료의 삭감, 배송구역의 조정,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등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 ----- ----- ----- ---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5. (생략)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u><신 설></u> <u><신 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u><신 설></u> 13. ~ 15. (생략) ② (생략)	5. 제14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6. (현행 제5호와 같음)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14.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¹⁾, 당사자 간에 합의 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²⁾ 하여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그러나 택배기사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³⁾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⁴⁾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속적 야간·휴일노동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⁵⁾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여 주요 택배사에서 배송업무를 설 연휴 동안 중단하는 등⁶⁾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자체 배송망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나 편의점 자체 물류망 등 일부 업체는 연중무휴로 택배를 운영하고 있어 배송 경쟁이 재발하는 등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 뉴시스, 「'83시간 과로사' 불러온 새벽배송…쿠팡 노동자 “속도전 멈춰야”」, 2025.11.14.
6) 연합뉴스, 「택배기사도 설 연휴 쉰다」, 2026.2.11.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설날, 추석, 선거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이유로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거나(1억원 이하), 의무휴업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3천만원 이하), 불이익한 처우(500만원 이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업법례로 「유통산업발전법」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휴업제도를 2012년에 도입하였으며,⁷⁾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이를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⁸⁾⁹⁾ 전통시장, 온라인몰, 소규모 점포 등 대형마트 등에 대한 대체수단이 존재하나,

개정안에 따른 택배서비스 의무휴업일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위반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택배서비스는 전국 단위의 통합물류망과 일정 사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배송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택배 의무휴업일 제도의 도입은 유통·물류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해당 제도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유통·물류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9)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269,273,355(병합)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우선, 택배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면으로는,

첫째, 택배관련 업무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누적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택배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택배종사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일 보장 의무¹⁰⁾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제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택배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의무휴업일 제도는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¹¹⁾를 통하여 설날, 추석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택배 업무 종사자들의 참정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1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1)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현황

○ (주관) 을지로위원회

○ (이해관계인) 택배사업자, 택배종사자, 화주, 정부 등

- 택배사업자: 통합물류협회, 쿠팡CLS, 롯데, 한진, 로젠
- 종사자: 민주노총 택배노조,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과로사대책위
- 대형화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 소비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정부: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 (주요 의제)

- ‘21년 사회적 합의 결과 이행 점검 및 조정(분류작업, 장시간 노동 금지 등)
- 새벽배송 및 연속적 야간·휴일노동 개선방안
- 유통물류 산업의 선진화 등 기타 사항

반면 택배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면으로는,

첫째, 명절 전후 단기간에 소득을 확보하려는 택배종사자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증대를 위해 추가근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독립사업자 지위를 가지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해 국가가 휴업을 명령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화주로부터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및 택배휴업 기간 동안 화주들이 택배사업자가 아닌 일반 화물운송사업자 등에 배송위탁을 할 경우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음.

둘째,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인에 대한 피해 등 의무휴업일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유통·물류 생태계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택배 의무휴업은 제조업, 농수산업, 유통업,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연결된 공급망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고, 신선식품·농수산물 배송이 확대된 상황에서 배송휴무에 따른 폐기 증가 및 재고 처리비용 상승 등 입점업체·납품업체·중소 브랜드 등 산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유통환경의 변화로 소비자가 익일 또는 당일 배송가능 여부가 구매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입점 중소사업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택배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무휴업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택배기사의 수입감소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에 따른 편익감소 우려 등이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택배휴업기간 동안 화주들은 택배사업자가 아닌 일반화물운송사업자 등에 배송위탁을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의 우려도 있음. 이에 의무휴업에 관한 사항은 국회 중심으로 운영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이해관계자 의견

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①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으로 인해 유통·물류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②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비용과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③과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와 유사하게 정책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 간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 방식의 적정성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

택배 의무휴업제는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제조업, 농수산업, 유통업,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연결된 공급망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 입점업체·납품업체·중소 브랜드 등 산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는 익일 또는 당일배송 가능 여부를 구매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배송이 지연될 경우 입점 중소기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무엇보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365일 배송서비스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 된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운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 편익 감소와 산업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충분한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균형있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통합물류협회 의견

【 택배사업자 의견 】

A사업자	○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의 우려가 있어,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사별로 취급 품목에 맞춰 휴업일 지정 필요
B사업자	○ 일부 택배사가 개정안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날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일부 업체의 의무휴업 미참여로 인한 물량 쏠림 방지”라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절
C사업자	○ 택배사업자가 아닌 일반화물운송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며, 화주사로부터의 불이익 예상
D사업자	○ “업체별 순환 휴무제”나 “자율적 대체 휴무”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
E사업자	○ 택배기사 소득감소, 택배업 연관 사업 연쇄 피해(물류센터 근로자, 간선 기사 등의 일자리 감소), 택배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생활물류협회 의견

의무휴업에 따른 배송물량 조정, 배송 기간 조정 등의 권한은 택배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영업점은 삭제 필요하며, 의무휴무일 시행 과정에서 영업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